

##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 서울특별시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 대상,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동작, 관악 등)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신청유형>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은 무자녀 부부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 모든 신청 유형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12개월간 지급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5. 6.(수) 10:00 ~ 5. 19.(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15,000명
  - 청년 1인 가구 : 12,000명
  - 전세사기피해자, 한부모가족 : 각각 1,000명
  -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각각 500명
  - ※ 전세사기피해자 등 신설 신청 유형 미달 시 청년 1인 가구에서 추가 선정(1→4구간 순)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 선정 및 지급

- 선정방법 :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간별 전산 추첨
  -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25일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8월(7월분), 10월(8월, 9월분), 12월(10월,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7년에 격월 지급 예정 (※ 지급 일정 변동 가능)
  -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2. 신청 자격요건

### □ 신청 유형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무자녀 부부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된 경우에 한함(예비 신혼부부 신청 불가)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애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인 가구
  - ※ 모든 신청유형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신혼부부 유형에서 배우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고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신청 가능

### □ 자격 요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되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함.  
부부 공동임차인인 경우라도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
  -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연령)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6. 1. 1. ~ 2007. 12. 31.)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청년 연령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인이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 고려하여 최대 42세까지 연령 상한 연장하여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예시)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0세(1985.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41세(1984.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42세(1983.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5.12.기준)은 4.5%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금액 × 4.5% ÷ 12개월

예시1)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87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7.5만원(2천만원 × 4.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5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5만원(4천만원 × 4.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을 1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혼부부인 신청인 및 배우자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 탈락)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건강보험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상 월 평균 소득이 '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를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공고일 기준,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금액 기준으로 확인함

※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현재와 현저히 다를 시, 이의신청 기간 중 보완 가능(FAQ 참조)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국토부 청년월세 신청 가능

<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중위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중위 120%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11,418,180
중위 150%	3,846,357	6,298,938	8,038,554	9,742,107	11,335,079	12,833,928	14,272,72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사람
  - ※ 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
  - ※ '26년 서울시 청년월세에 선정되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당해 국토부 청년월세에 최종 선정될 경우, 기 지급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전액 환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 신청유형을 달리하여도, 신청자 본인의 과거 선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
  -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자치구(은평, 광진 등)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사람,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 ※ 신청 전 타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예시 : 4월까지 수급, 5월 미수급일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배우자'이거나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4종)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심사 탈락(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불가능)

#####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 ~ ㉢ 중 하나 제출

-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고시텔,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 ㉡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계약서 상 소재지가 동일해야함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 ㉣ 모두 제출

㉢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4) 기숙사의 경우 기관 날인된 입실확인서 제출

②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6.2~4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이체 일자(연월일),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명시될 경우, 마스킹 없이 전체 표기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

※ 비동의 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제출

※ 동의서 :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서류 ]** ※ 해당하는 신청인만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한부모가족 유형’ 으로 신청 시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신청일 이전 결정되어야 함
  -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으로 신청 시 제출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신청인의 군 복무내역을 증빙하고 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연장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5,000명
- 선정방법 :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분별 전산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추첨
    - ※ 유형별로 모집인원 미달 시 ‘청년 1인 가구’ 에서 추가 선정(1→4구간 순)
  -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비율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48% 초과 ~ 120% 이하	3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3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2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b>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4.5%) 및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b>	48% 초과 ~ 150% 이하	15%

- ※ 구간별 선정 인원이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4.5%) 합산

## 5.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6년 7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6. 이의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소명 자료 제출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 를 결정·통보한 날(‘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부터 10일 이내(1건만 신청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

※ 필수 서류(4종)를 미제출하여 서류 심사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 시 자료 보완 불가능

## 7.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6년 7월 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 기간 내 미개설 시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 ※ 청년드림통장 기 보유자는 정상 거래 가능 여부를 신한은행에서 확인 필요  
(사용 불가 계좌일 경우 선정 취소됨)

## 8.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해도 동일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동시 수혜
    - ※ 유사사업 동시 수혜의 경우, 동시 수혜 발생 월부터 지급 중지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월세 주거비 지원 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됨
    - ※ 지급 중지 이후 재개시, 재신청은 불가하며, 잔여 지원금은 소멸됨
-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변경 신고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월은 종전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적용

## 9.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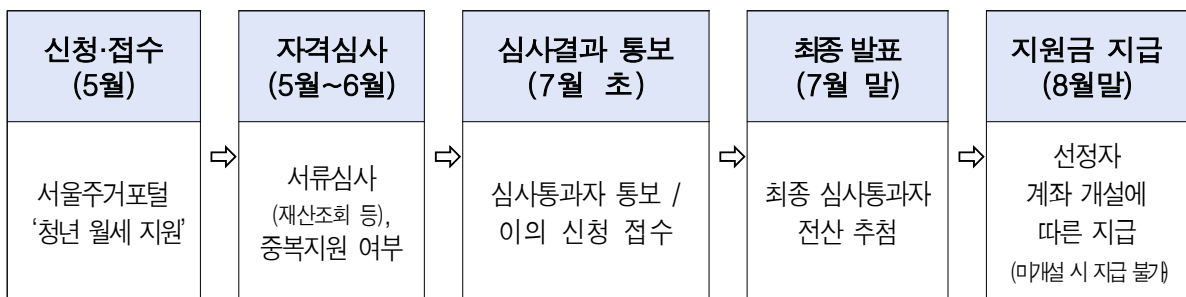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착오 또는 부정한 신청의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폭주로 인한 상담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는 짝수일) 문의를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1833-2030)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정확한 정보(자료) 없이 신청자 질의에 따라 상담을 진행 하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 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



\*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개요(요약) >**

**지원대상** : 19 ~ 39세 청년 ※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구분	1인 가구	전세사기피해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지대 원상	주민등록상 청년 1인 가구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지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소한 청년 1인 가구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청년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무자녀 부부	주민등록상 청년 1인 가구이며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거주자	
요건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서울 월세 거주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4.5%) 및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재산	(신청자 기준)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사기표준액 2,500만원 미만				
인원	12,000명	1,000명	1,000명	500명	500명	
제서 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li> <li>◦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li> <li>◦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li> <li>◦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li> <li>◦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li> <li>◦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li> <li>◦ 전세사기피해지등 결정문</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li> <li>◦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li> <li>◦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li> <li>◦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li> <li>◦ 한부모가족 증명서</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li> <li>◦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li> <li>◦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li> <li>◦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li> <li>◦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li> <li>◦ 3개월(’26.2~4월) 월세 이체 내역</li> <li>◦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li> <li>◦ (필요시) 방착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li> </ul>	
지제 원외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유사사업 동시 수급자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제출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 (12개월) ※ 생애 1회

**신청기간** : '26. 5. 6.(수) 10:00 ~ 5. 19.(화) 18:00 (14일간)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접수

**선정자 발표** : '26년 7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

##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FAQ 목록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신청 자격	Q1. 연령(19~39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10
	Q2.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10
	Q3.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10
	Q4.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1
	Q5.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 거주지는 타 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11
	Q6. 신청일 현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11
	Q7.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11
	Q8. 청년 1인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11
	Q9. 청년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2
	Q10. 전세사기피해자인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2
	Q11. 청년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2
	Q12.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13
	Q13.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13
	Q14. 다른 월세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13
	Q15. 한번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번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13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신청 자격	Q16. 올해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신청 할 수 있나요?	14
	Q17.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 가능 한가요 ?	14
	Q18. 친구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14
	Q19.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배우자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14
	Q20.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14
	Q21.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중에 월세 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15
	Q22. 신청인 정보 등록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확인 시,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뜨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15
신청 방법	Q23.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소식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이메일, 문자 등)	16
	Q24.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6
	Q25. 신청 도중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7
	Q26.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8
	Q27. 서울주거포털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Q28.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Q29. 월세지원 신청 완료 후 변동 사항(주소지, 신청자 정보, 첨부파일 등)이 생겼습니다.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19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b>신청 방법</b>	Q30.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을 잘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19
	Q31. 신청 후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19
<b>제출 서류</b>	Q32. 신청시 준비해야 할 건 뭔가요?	19
	Q33.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19
	Q34.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
	Q35.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 기관장’ 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되나요?	20
	Q36.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하나요?	20
	Q37. 신청시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입력해야 하나요?	20
	Q38.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탈락하나요?	21
	Q39.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으면 탈락하나요?	22
	Q40.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22
	Q41.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무보증 월세로 하숙방에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22
	Q42.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b>제출 서류</b>	Q43.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요?	23
	Q44. 월세 이체증을 최근 3개월 치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 내역이 3개월이 안되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23
	Q45. 월세액과 관리비를 합쳐서 한번에 임대인에게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 이체 내역과 계약서상 월세액 금액이 불일치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4
	Q46.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나 현금 납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4
	Q47. 월세를 카드 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 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Q48. 여러 달의 월세(연세)를 한 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Q49. 월세 이체를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부모님 등)이 했는데, 신청인 본인이 월세 이체하지 않으면 탈락하나요?	25
	Q50.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후 제출 서류 중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5
<b>거주 요건</b>	Q51. 월세 정보 입력 시 실제 월세액이 천원 단위인데,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25
	Q52.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25
	Q53. 저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임차보증금 9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26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거주 요건	Q54.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26
	Q55.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4.5%로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6
	Q56.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26
	Q57.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27
	Q58.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28
	Q59. 고시원에 거주 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 등록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28
	Q60. 근린생활시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 거주 시 주택 유형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28
	Q61. 청년월세지원 접수 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 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28
	Q62.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면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9
	Q63. 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29
소득 재산 요건	Q64. 기준 중위소득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9
	Q65.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29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b>소득 재산 요건</b>	Q66. 신청인이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30
	Q67. 소득 기준에 부모님 소득도 모두 포함되나요?	30
	Q68.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과 현재의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완이 가능한가요?	30
	Q69.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각자 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득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31
	Q70. 일반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31
	Q71. 차량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31
	Q72.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31
	Q73.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보나요?	32
<b>신청 제외 대상</b>	Q74. 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32
	Q75.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2
	Q76.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 제외 대상인가요?	32
	Q77.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32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b>신청 제외 대상</b>	Q78. 협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 등)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 가능 할까요?	33
	Q79.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월세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33
	Q80.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3
	Q81.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나요?	33
	Q82. 타 시도에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고, 서울시로 이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4
<b>선정 심사</b>	Q83. 공고문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4
	Q84.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나누어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4
	Q85.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인데 몇구간에 해당하나요?	34
	Q86.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5
	Q87. 대기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언제 대기자 선정연락을 주시나요? 대기자인데 합격 가능성은 있나요?	35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b>급여 지급</b>	Q88. 월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35
	Q89.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인가요?	35
	Q90. 20만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36
	Q91.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36
	Q92.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급여 입금 전용계좌 개설은 언제 하나요?	36
	Q93. 지원금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했는데 주거포털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36
	Q94.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36
	Q95.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37
	Q96.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7
	Q97.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37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기타	Q98.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 가능한가요?	37
	Q99. 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 시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유지가 가능한가요?	38
	Q100.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38
	Q101. 일반청년(1인가구) 유형으로 신청하여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하였습니다.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38
	Q102.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38
	Q103.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39
	Q104.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 연결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39

#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FAQ

## □ 신청자격 관련 Q&A

Q1

연령(19~39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 상 1986. 1. 1.~2007.12.31.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제대군인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A

- 제대군인인 신청인의 군 복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최대 42세(주민등록상 1983.1.1. 출생자부터)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하며, 공익 등 사회복무대상자와 군 복무를 한 여성도 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Q3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 신청 당시에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Q4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모두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 거주지는 타 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모두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6

신청일 현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 당시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Q7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Q8

청년 1인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청년 1인 가구입니다.
- 다만, 청년(19세~39세)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9

청년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신청인이 청년(19세~39세)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필요
- 한부모가족인 신청인과 자녀 외에,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10

전세사기피해자인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하여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4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합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는 특별법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선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1

청년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자녀가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 기간은 상관 없으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신청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부부 외에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12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 임차인인 본인 외 다른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서울주거포털’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Q13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유형에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Q14

**다른 월세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다른 월세지원 사업과 신청기간이 겹칠 경우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다른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동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니 해당 사업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다른 월세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15

**한번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번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생애 1회 지원 제한이 있어, 과거에 신청인 본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유형을 달리하여 신청하여도, 신청인 본인의 과거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16	올해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신청 할 수 있나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요건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니 내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7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 가능 한가요?
A	○ 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되어 청년 1인 가구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한 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다른 분은 추후 신규 사업 모집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18	친구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청년(19세~39세)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셰어하우스(공유주택)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19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배우자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임차인이어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심사 탈락하게 됩니다.
Q20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Q21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중에 월세 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 5월 19일 18:00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5월 19일 이전이나 계약서상 입주일, 잔금지급일, 전입신고 등이 5월 19일이 지난 후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는 선정 제외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2

신청인 정보 등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뜨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A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주민 등록된 동주민센터에서 결정 및 전산 등록을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시스템에서는 주민번호가 행정안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조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관련하여 해당(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및 확인 바랍니다.

## □ 신청방법 관련 Q&A

Q23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소식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이메일, 문자 등)

A

-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는 없으며, 메일 알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index.jsp>)에 로그인 후 ‘나의 서울 - 회원정보 변경 - 본인확인 진행 - 부가 서비스’ 에서 ‘행사강좌 등 정보’ 에 ‘청년월세신청안내’ 를 체크하시면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 송수신 환경에 따라 메일이 수신 되지 않을 수 있어 메일 알림 서비스는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수시로 직접 확인하셔야 모집 기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Q24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도중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신청 도중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캐시 삭제를 한 뒤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PC 브라우저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

#### 1) Chrome (크롬)

- ① 도구( ... )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단축키:Ctrl+Shift+Del)
- ② 고급 탭 선택 후 기간을 전체기간 선택 후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체크하여 데이터 삭제
- ③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브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

#### 2) Edge (엣지)

- ① 도구( ... ) > 설정
- ②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지금 지우기  
- "지울 항목 선택" 클릭
- ③ 시간 범위는 모든 시간 선택 후 지금 지우기 버튼 클릭
- ④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브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

#### 3) Safari (MAC)

- ① 왼쪽 상단의 Safari > 설정
- ② 설정 > 고급 > 하단의 "메뉴 막대에서 개발자용 메뉴 보기" 체크
- ③ 메뉴표시줄의 개발자용 > 캐시 비우기
- ④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브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

### < 모바일 브라우저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

#### 1) 안드로이드 크롬

- ① 우측상단 메뉴( ... )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진입
- ② 설정 메뉴 중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클릭
- ③ 기간을 전체기간으로 선택 후 데이터 삭제 버튼을 눌러 캐시 삭제
- ④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브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

#### 2) iPhone (Safari)

- ① iPhone에서 설정 앱을 열고 상단 검색창에서 Safari를 검색  
또는 하단 앱> Safari 클릭
- ②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방문 기록 및 웹 사이트 데이터 지우기'를 클릭
- ③ 방문 기록 데이터 지우기를 클릭하여 확인을 진행
- ④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브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

A

Q26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월세지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Q27

서울주거포털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 회원정보 변경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개명 전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 서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문의 : 서울시 회원관리 02-2126-4519 / 02-2133-6517

Q28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아이핀(I-PIN)을 발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아이핀 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아이핀 신규 발급 시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인증서)를 추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① 온라인 발급  
※ 아이핀 발급처 :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http://www.niceipin.co.kr)) → “아이핀발급” 메뉴 통해 발급 (문의 : ☎1600-1522)
- ② 오프라인 발급  
본인 명의 신분증 지참하여 나이스평가정보 고객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주민센터 아이핀 발급 업무 중단('22년 1월 1일~)

- Q29** 월세지원 신청 완료 후 변동 사항(주소지, 신청자 정보, 첨부파일 등)이 생겼습니다.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 신청기간('26. 5. 6.(수) 10:00 ~ 5. 19.(화) 18:00 마감시간까지) 내에만 수정 가능 합니다.
- Q30**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을 잘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A**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자 직접 확인)
- Q31** 신청 후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
- 신청일 마감 이후 최종 선정 전까지는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선정이 되었다면, 선정 이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관련 Q&A**

- Q32** 신청시 준비해야 할 건 뭔가요?
- A**
- 신청시 준비할 필수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인 2~4월의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까지 총 4가지입니다.
  - 이외에 필요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Q33**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A**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Q34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 2개 이상의 제출서류(예를 들면 고시원, 무보증월세)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 또는 각각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Q35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 기관장’ 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되나요?

A

-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Q36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하나요?

A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또는 가리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7

신청시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입력해야 하나요?

A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월세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아님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A

- ① 입실확인서
  -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① 전대차 계약서
  -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Q39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으면 탈락하나요?**

○ 임대인과 직접 계약 등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더라도 ① ~ ③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A

-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Q40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필수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할 경우 심사 결과 탈락됩니다.

A

Q41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무보증 월세로 하숙방에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①입실확인서와 ②(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2가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A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2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3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요?

A

- 임대차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예시) 임차료는 매월 자녀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 (임대인 = 집주인) 서명 날인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명의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실 경우, 변경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4

월세 이체증을 최근 3개월 치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 내역이 3개월이 안되면 증빙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최근 1달만 이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이체증만 제출하면 되며, 5월 19일(신청마감일) 이전부터 거주(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월차임 후불 조건이라 월차임 이체확인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보증금을 완납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대차 계약 2월, 2 ~ 4월 월세 이체 : 2, 3, 4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3월, 4 ~ 5월 월세 이체 : 4, 5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4월, 4월 월세 이체 : 4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5월 19일 이전, 5월 월세 지급 기일 미도래로  
월세 이체내역 없는 경우 :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Q45** 월세액과 관리비를 합쳐서 한 번에 임대인에게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 이체 내역과 계약서상 월세액 금액이 불일치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 월세액과 관리비를 한 번에 이체하였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으로 월세 이체가 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46**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현금 납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경우 신청접수 종료일 5월 19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월세 금액, 월세 이체일자 등이 표시된 월세 계좌 이체증을 신청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정(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등)이 있는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 작성제출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Q47** 월세를 카드 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 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내 임대인의 정보 확인되어야 함

**Q48** 여러 달의 월세(연세)를 한 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는 확인서 (내용 및 임대인 서명날인 포함)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서식(월차임 납부확인서)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Q49

월세 이체를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부모님 등)이 했는데, 신청인 본인이 월세 이체하지 않으면 탈락하나요?

A

- 월세이체내역에는 이체일자, 임대인성명(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체한 사람 명의가 신청인과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Q50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후 제출 서류 중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신청기간('26. 5. 9.(수) 10:00 ~ 5. 19.(화) 18:00 마감시간까지)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자격 심사에서 탈락되며, 이의 신청 기간에 추가 제출이 불가하니 신청 마감 전 꼭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주요건 관련 Q&A

Q51

월세 정보 입력 시 실제 월세액이 천원 단위인데,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A

-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을 천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월세 108,000원은 100,000원으로 입력

Q52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시 시스템(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Q53

저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임차보증금 9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54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4.5%를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합산액이 80만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5천만원×4.5%÷12개월+62만원=807,500원→80만원(천원단위 절사)

Q55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4.5%로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25년도 말 기준금리(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을 더한 비율입니다.

Q56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A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률 표기가 있는 경우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분담률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임차인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아님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A

- ① 입실확인서
  -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① 전대차 계약서
  -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Q58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A

- 기숙사 운영 기관에서 발급받은 거주확인서(입실확인서)와 납부 증명서(이체확인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거주확인서 내에는 거주기간 및 월차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납부 증명서에는 납일일자 및 납입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운영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Q59

고시원에 거주 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 등록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신청일 : 5월 15일, 월세납부일 : 5월 25일 ⇒ 계약기간 : 4.25. ~ 5.25.

Q60

근린생활시설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 거주 시 주택 유형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층 이하는 다세대주택,  
5층 이상은 오피스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Q61

청년월세지원 접수 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 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A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 선정자가 되었다면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 본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시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8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나 전세로 변경하는 등 월세 거주가 아닌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Q62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거주요건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외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기록을 바꾸신 후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시더라도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월까지의 월세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중지신청 시)

Q63

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A

-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요건 관련 Q&A

Q64

기준 중위소득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신청인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월 평균 소득이 '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초과 ~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최근 소득 금액증명원 상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청년 1인 가구이고,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아버지(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아버지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상 가구원수 3인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시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월 평균 소득이 2,572,337원 초과, 8,038,554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Q65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란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

Q66

신청인이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상 가구원 수와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 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67

소득 기준에 부모님 소득도 모두 포함되나요?

A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와 별도로 되어 있다면 부모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부모와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청년 1인 가구이고,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아버지(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아버지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상 가구원수 3인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시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월 평균 소득이 2,572,337원 초과, 8,038,554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Q68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과 현재의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완이 가능한가요?

A

- 이의신청 기간(서류심사 발표일로부터 10일)에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소득을 판정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Q69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각자 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득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A

- 신청인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이 건강보험상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지 않다면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70

일반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A

-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그 외 지역은 WETA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 ※ 신청인 소유의 일반재산이 없는 경우는 확인 불필요

Q71

차량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승용차 가액조회”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문의 : ☎126 국세상담센터)

Q72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 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주택 유형 및 크기에 관계없이 선정 제외됩니다. (문의 : ☎1644-7445)

Q73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보나요?

A

- 신청인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보아 선정 제외됩니다.
- 만약 상가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재산 가액에 오피스텔의 건축물과세표준액이 포함되며, 일반재산가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면 선정 제외됩니다.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포함

### □ 신청 제외대상 관련 Q&A

Q74

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5월 미수혜)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Q75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76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 제외 대상인가요?

A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청년월세는 중위소득 48% 초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월평균 소득이 48% 초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77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A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액은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예시) 주택바우처 12만원을 수령할 경우 월세지원금은 8만원임

Q78

**협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 등)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 가능 할까요?**

-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주택이 공공 임대주택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은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하고 있으면 사업신청 제외대상자입니다.

A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문의는 LH, SH에 문의)

Q79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월세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 해당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의 공급유형이 공공임대인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이라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으로써,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80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81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

- 일자리사업(사회공헌·뉴딜) 참여자는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가능합니다.

Q82

타 시도에서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고, 서울시로 이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가 종료된 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정심사 관련 Q&A

Q83

공고문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선정 예정인원은 1만 5천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 되어도 심사통과 인원이 선정 예정인원 보다 많을 경우 모집 구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심사 : 제출 서류 및 재산·소득·주택 소유 여부 등 월세지원 자격 심사

Q84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나누어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을 기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을 우선 지원하고자 구간별 선정인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Q85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인데 몇구간에 해당하나요?

A

- 소득 반영이 필요하여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구간확정이 어렵습니다. 구간은 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확정됩니다.

Q86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결과를 '26년 7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1회만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87

**대기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언제 대기자 선정연락을 주시나요? 대기자인데 합격 가능성은 있나요?**

A

-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번호가 없을 경우 대기 없이 선정탈락이므로 다음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취소 예상 인원, 개별적인 대기 합격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급여 지급 관련 Q&A**

Q88

**월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 첫지급(7월분)은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2회차는 10월(8·9월분), 3회차는 12월(10·11월분)에 지급되며, 잔여 7개월분은 '27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휴일 및 회계처리 마감 등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 변동 가능)

Q89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인가요?**

A

- 월세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될 예정으로, '26년 8월 말에 1개월분, 10·12월에 각각 2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잔여 7개월분은 '27년에 지급될 예정이며, 휴일 및 회계처리 마감 등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 변동 가능합니다)

Q90

20만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 월세 지원 대상자가 전월 납부(계좌이체)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세 10만원 납부 시 10만원 지원

Q91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A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월세 20만원 납부,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령액 12만원인 경우 8만원 지원

Q92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급여 입금 전용계좌 개설은 언제 하나요?

A

- 7월 예정이며,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와 함께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Q93

지원금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했는데 주거포털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 신규 개설 완료하면 '계좌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약정체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Q94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

-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 개설 후, 신청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Q95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A

- 청년수당을 지급받거나 기초생활 수급, 월세 없는 전세이주 (이사),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처리 됩니다.

Q96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대리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리 수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대리 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를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자세히보기] - 변경신청(대리수령) 등록하면 확인 후 계좌개설 주소를 신청인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 서식(대리수령신청서)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Q97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 당시에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자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기타문의 Q&A**

Q98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 가능한가요?**

A

- 신청 취소 기한 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 보기 - 신청정보 - 하단 [신청취소] 버튼 클릭  
※ 신청 취소 기한은 선정자 발표 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9	<p><b>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 시도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지원 유지가 가능한가요?</b></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 지원을 받는 중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li> <li>○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신청을 하여야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li> </ul>
Q100	<p><b>월세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b></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지원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변경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li> <li>○ 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li> </ul>
Q101	<p><b>일반청년(1인가구) 유형으로 신청하여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하였습니다.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b></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에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배우자, 자녀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사람(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중지 사유에 해당됩니다.</li> </ul>
Q102	<p><b>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b></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 지원을 받는 중 서울 내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간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li> <li>○ 만약 주소지 변동 없이 계약사항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li> </ul>

Q103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A

- 월세 지원을 받는 중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중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입대일)이 포함된 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104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 연결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A

- 모집 공고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1833-2030 ARS안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